

# 원산지표시 위반유형

## 미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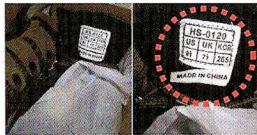
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



물 품 : 중국산 상비약품 상자  
위반내용 :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.

## 부적정표시

글자를 작게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행위



물 품 : 중국산 운동화  
위반내용 : 원산지표시를 쉽게 떨어질 수 있게 표시함.

## 제재조치

- 행정제재 : 과징금(최대 3억원), 과태료(최대 1천만원)
- 형사처벌 : 징역(최대 3년), 벌금(최대 3천만원)
- ※ 2010.10.6일부터 징역(최대 5년), 벌금(최대 1억원) 상향

## 원산지표시 시중단속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?

부 서	업 무	연 락 처
관세청 기획심사팀	시중단속 총괄	042-481-7896
서울세관 심사6관실	해당지역 시중단속	02-510-1292
부산세관 심사2관실		051-460-6331
인천세관 심사1관실		032-452-3342
대구세관 납세심사과		053-664-5327
광주세관 납세심사과		051-975-8076



# 원산지표시 관련 조회

관세청 홈페이지 접속[<http://www.customs.go.kr>]

▶▶관세청>통관정보의문>수출입요건>원산지제도

★적정표시사례, 질의회신사례를 e-book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# 위반행위 제보방법

##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발견하면

- 전화 신고 : 국번없이 **125**
- 인터넷신고 : 관세청 홈페이지 > 국민의 문 > 신고센터 클릭
- 세관방문 및 상담



관세청  
KOREA CUSTOMS SERVICE

함께하는 국민, 더 큰 대한민국

# 원산지표시 가이드

올바른 원산지표시  
국가브랜드를 지키는 힘!



관세청  
www.customs.go.kr



